

제283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부록)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검토과정

- 발의일자 : 2021년 6월 4일
- 발 의 자 : 하병문·김지만·이영애·이태손·임태상·정천락 의원
- 회부일자 : 2021년 6월 8일

2. 주요내용

- 다른 기금 및 회계의 예탁의무를 규정함(안 제8조).
- 통합계정의 예탁기간을 정함(안 제9조).
-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에 관해 규정함(안 제10조).

3.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 ▶ 각종 회계·기금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용자 창구를 일원화하는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현행 조례에 자금의 예수·예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임.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 안 제8조에서는 다른 기금 및 회계의 여유자금은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근거로 통합기금에 예탁하도록 하되, 예수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정하였음.
- ▶ 안 제9조에서는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을 기준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하도록 하여 기금 운용의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 안 제10조에서는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매 분기 마지막 날¹⁾을 원리금 상환일로 지정하여 자금의 정기적인 유통을 통해 여유재원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음.

《 통합기금 예수·예탁 흐름도 》



1) 1분기 3월 31일 / 2분기 6월 30일 / 3분기 9월 30일 / 4분기 12월 20일 - 예외) 회계연도 종료 고려

○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 ▶ 이 개정 조례안은 현행 통합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통합기금의 예수·예탁에 관한 규정을 상위 법령인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대구시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재정 건전성 도모를 위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연계성, 조례의 체계, 내용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시·도별 통합기금 예탁기간 규정 현황

시·도별	예탁기간	근거조항	비고
대구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규칙 제9조	
서울	5년 이내	규칙 제5조	규칙 제정중
부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례 제8조	규칙 미제정
인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규칙 제4조	통합관리기금조례
광주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규칙 제11조	
대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규칙 제9조	기금관리기본조례
울산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규칙 제6조	
세종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규칙 제5조	
경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례 제12조	규칙 미제정
강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규칙 제7조	
충북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규칙 제2조	
충남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규칙 제24조	통합관리기금시행규칙
전북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규칙 제6조	
전남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례 제16조	기금관리기본조례 규칙 미제정
경북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례 제11조	
경남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규칙 제7조	
제주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례 제15조	

※ 예탁기간 : 3년거치 5년상환 7개, 2년거치 3년상환 9개, 5년이내 1개 지자체

※ 근거조항 : 규칙 12개, 조례 5개(규칙 미제정 3개) 지자체